

	<h2>산학협력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5-1-33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산학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임상실습 및 취·창업 지원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산학협력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2.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연간 사업계획 수립, 평가 및 환류
2. 산학협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
3. 임상실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
4. 취·창업 지원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
5. 기타 산학협력에 관련한 제반사항

제4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5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	<h2>산학협력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5-1-33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2. 02. 18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산학협력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